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0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정비(안 제1조)
- 나. 건강리더 정의(안 제2조제5호)
- 다. 건강증진센터 정의 및 설치 등(안 제2조제6호 신설, 안 제15조 및 제16조)
- 라.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(안 제6조제2항)

- 마.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(안 제6조제3항)
- 바. 건강증진센터 보조 및 지원(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신설)
- 사. 건강리더의 양성(안 제17조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10조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6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‘건강리더’와 ‘건강증진센터’의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
 - 안 제15조에서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수행 사업에 대하여
 - 안 제16조에서는 건강증진센터의 비용 보조 및 물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
 - 안 제17조에서는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함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체력인증 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명칭 변경하며,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구 지원 및 우수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45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[제목개정 2019. 12. 3.]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5. 3. 25.] [법률 제20831호, 2025. 3. 25., 일부개정]

제16조의2(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2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, 종류,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5. 28.]